2021악년도

꿈과 사랑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 수업 및 등교수업 학사 출결 평가 기록 운영 계획(앤



정왕중학교

1. 추진 개요

- **(목적)**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지원하고, **학생평가 운영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방안 마련하고자 함
- (적용 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특수 학교 및 각종학교
 - ※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경우 원격수업 관련 지침은 학생별 특성 및 교육 여건을 고려해 별도 지침 적용 가능
 -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전·편입 및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과목, 농산어촌 도서벽지 등 학교 미개설 선택교과) 등은 제외(해당 지침에 따라 운영)
- **(적용 시기)** 2021년 3월 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2. 근거 법령 및 주요 지침

- ㅇ 교육과정 관련
-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2항(교육과정 등), 제24조제3항(수업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제4항(수업 운영방법 등)
-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0-248호)
- 신학기 휴업에 따른 전국 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안 안내(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2248, 2020.3.20.)
- 2021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등 원격수업 운영 기준(교육부 교육 과정정책과, 2021.1.28.)
- 출결, 학생평가, 학생부 기재 관련
- 「초·중등교육법」제25조(학교생활기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21조부터 제25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65호)

【교육부 훈령 제365호 [별표8] (출결상황관리 등)】

- 4.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 가. <u>학교의 장</u>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u>「초.중등교육법」제24조 제3항제1호의</u> <u>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출결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u>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알림(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563, 2021.1.26.)
- 코로나19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한 학생·교직원의 등교·복무지침 개정 추진 요청(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921, 2021.1.25.)
- ㅇ 감염병 예방 관리 관련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2차 개정판(교육부, 2016.12.)
- 코로나비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9-4판)(중앙방역대책본부, 2020.12.6.)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3판)(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10757, 2020.12.11.)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중대본, 2020.11.1.)

3. 운영 기본 원칙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 방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25~26쪽 [참고 2] 참조)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위	우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학교 등교 원칙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고교 2/3) 최대 2/3 이내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 ※ 밀집도 자율 결정 가능(~2.5단계): ①특수학교·급(3단계에도 1:1 또는 1:2 학교·가정 대면교육 병행 가능), ②소규모학교(중고 400명 이하), ③농산어 촌학교(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된 학교)
- ※ 밀집도 기준 예외(~3단계): ①돌봄 ②기초학력 지원 필요학생 및 중도입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대면보충지도 가능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 적용 방안(안)]

- · (결정 주체)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안내 예정
- · (기본 방향) 한 학기 전국평균 수업일수 1/3을 기준으로 학생평가 및 학생부^{*} 3단계 방안 적용 여부 결정(결정 후 해당 학기 내 재변경 없음)
 - * 3단계 방안 적용 여부는 학기별로 결정하며, 해당 학기 내에서만 유효함.
- o 등교수업 시 학교 내 **밀집도** 및 학생 간 **밀접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
-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증지 및 학교 시설 이용제한조치** 등은 **코로나19** 대응지침(중대본) 및 감염예방 관리 매뉴얼(교육부)에 따라 실시
 - ※ 본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기준·기간 등을 정하는 지침이 아님
-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한 **학교 시설**의 **이용제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등교수업 시 원격수업계획**을 **사전**에 **마련**
 - ※ 개인단위 등교중지 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체학습 제공 방법 마련함
- **등교수업** 시 기 수립된 학교의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계획」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에 따라 코로나19의 학교 내 유입 및 감염 차단, 확산방지 조치 후 수업 실시
- 본 가이드라인 및 지역·학교 여건, 교사의 전문적 판단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도교육청 관련 지침 및 학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 수업 및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서 구체적인 사항 결정

4. 학교 운영 계획 및 수립 추진 절차



- (1 운영 계획 수립) 교과별 협의회 등에서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의 출결·학생평가·학생부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
- (출결) 원격수업 유형별·교과별 출결 확인 계획* 수립
- *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 출결 확인 시기를 포함한 인정 기준, 출결 기록 및 관리 방법. 결석 사유 및 출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종류 및 제출 기한 등 포함
- (학생평가 및 학생부) 평가계획 수립,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관찰 및 피드백 제공 방안 마련, 누가기록 방안 마련함
- (②사전 안내)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 운영 계획'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담임교사는 학급방 등을 통해 학생 관리함
- (③ 학사 운영) '학교 운영 계획'에 따라 출결, 평가, 학생부 기재 운영·관리함 ※ 원격수업 시, 학생의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무선 확인 등 학습 관리 실시함
- (④결과 처리)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시 누적 관리한 출결·평가 결과 최종 처리 및 학생부 최종 기재

5. 출결 관리

[원격수업]

□ 기본 원칙



- (출결 확인) <u>원칙적으로 당일</u> 교과별 <u>차시 단위</u>로 실시하되, <u>3일</u> (수업일 기준) 내 최종 출결 확인함
- <u>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교과별 해당 시간)이 원칙이며</u>,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함
- ※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접속 불량 등으로 수업참여가 어려운 경우 학생은 상황 발생 즉시 교사와 소통하고, 교사는 당일 대체학습을 부여하여 출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함.
- 실시간 쌍방향 수업 이외의 수업 유형은 3일 내 최종 확인함

 ※ 출결 확인 기간(3일, 수업 당일 포함 수업일수 기준)은 학교장이 임의 변경 불가

 예) 금요일 수업일 경우 화요일까지 최종 출결 확인
- **(출결 기록) 교과교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차시별로 출결 보조장부(출석부)에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 **기록**
- 교과교사와 담임교사가 미 수강 학생 수강 독려해야 함
- (출결 처리) 교과교사의 출결 기록(출석부 등)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인 후 담임교사가 1주일(7일) 단위로 종합하여 월(月)단위 출결(마감) 처리* 가능
- (실시간 조·종례) 실시간 조·종례 운영은 교육정보시스템(NEIS)
 출결 관리와 별도로 운영(NEIS에 반영하지 않음)
 - ※ 교육정보시스템(NEIS) 조·종례 출결 관리 방법(중등): 조회(종례)는 '결석'처리 또는 1교시(마지막 교시) 불참자의 '지각(조퇴)' 처리 시에만 결과 처리함

【실시간 조·종례 운영】 ※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육안전망 안착 지원 방안('20.9.15.)'

- (방식)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 또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
 * 화상 기반 프로그램(플랫폼 또는 학습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룹대화방 등
- (내용) 출결 및 건강상태 확인, 당일 원격수업 내용 개요 등을 주제로 소통
- (미참여 학생) 전화 또는 개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조·종례 내용을 전달하고 특이사항 파악
- (유의사항) 등교수업 기간 중에는 '등교중지 및 고위험군 학생' 이외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이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결 처리 불가
 - *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분반 포함)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결처리 불가함.

□ 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인정 방법

- 본 가이드라인의 유형별 확인·인정, 처리 방법 등을 활용하여 출결을 확인 (인정)하고 기록하되, 필요시 각 방법을 혼합하여 활용할 수 있음
 - ※ (예시) 과제중심 원격수업의 경우, 'LMS 접속기록'이 아닌 '과제수행 여부'로 출석 확인 가능
- 학교별 여건 및 특성에 따라 도교육청 원격수업 운영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함
- ※ 단, 출석 확인(인정)기간*은 학교에서 임의 변경 불가(전국 공통)
- * 실시간 쌍방향 수업: 당일(교과별 해당 시간), 이외 유형: 원칙적 당일(최종 3일 내)
- 출석부 등 보조장부 또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출결기록 관리 철저히 함

○ 실시간 쌍방향 수업

- (확인·인정 방법) 교사가 플랫폼 화면, 실시간 댓글(플랫폼, 별도 학급방) 등을 활용해 학생의 출석(참여)여부 확인(인정)
- (대체 확인 방법) 접속 불량 등의 사유로 실시간 접속이 불가한 학생은 대체학습을 제시(당일 제시)하여 그 이행결과를 근거로 출석 확인· 인정함
 - ※ SNS,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접속 불가 사실 확인 후 대체학습을 부여한 학생에 한하여 출석 처리 가능

○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확인·인정 방법)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해 학습시작 시점, 진도율, 학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출석 확인·인정
- ※ '출결 처리'를 위한 이수 기준은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등에서 결정(미층족 시 '결석(결과' 처리)
- ※ (참고-이수기준) ▲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80%, ▲ e-학습터: 60%, ▲ 온라인 수업(전·출입 등에 따른 미이수과목, 도서·산간 지역 미개설 과목): 70%
- (대체 확인 방법)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과제물 제출, SNS,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 활용

○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확인·인정 방법) LMS를 활용한 접속 기록, 과제 수행 결과물 제출 여부를 기준으로 출석 확인·인정 - (기타) 과제 인정 기준(인정 수준, 분량)은 시도별 세부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 마련, 학생의 수준을 감안한 과제 제시

○ 기타 유형 수업

- (확인·인정 방법) 시도별 세부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 출석 인정 기준, 출석 인정 증빙 자료, 제출 기한에 따라 확인 및 기록

<원격수업 운영 유형> ※학교교육과정과-8964(2020.7.14.)

구 분		운영 형태
	① - 1 (화상수업)	•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학생 간 화상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 ※ (화상수업도구 예시) 네이버 라인웍스, 구루미, 구글행아웃, MS팀즈, ZOOM, Webex 등 활용
① 실시간 쌍방향	① - 2 (콘텐츠활용 +화상수업)	 자체제작 학습콘텐츠 시청과 실시간 화상 토론 및 소통으로 즉각적 피드백을 결합 ※ (예시) 교사 자체제작 동영상 시청 + (학생 활동지 등) + 실시간 화상 수업(피드백) ※ 콘텐츠는 교사 자체제작(재구성 포함)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단원 및 차시특성 등에 따라 기존 콘텐츠를 일부 활용 가능
콘텐.	② 츠 활용] 수업	• 학생은 학급별 시간표 해당 시간에 교사 자체제작콘텐츠를 시청하고 교사는 댓글 등 학습 내용 확인 및 피드백 ※ (예시) - 교사 자체제작 동영상 시청→(학생 활동지 등) → 댓글형 피드백밴드, 카톡 등) ※ 콘텐츠는 교사 자체제작(재구성 포함)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단원 및 차시특성 등에 따라 기존 콘텐츠를 일부 활용 가능
과저	③ ¶ 수행 님 수업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내용을 맥락적으로 확인 가능한 과제 제시(교사자체제작 동영상, 활동지, 음성 파일 등) 및 피드백 ※ (예시) 과제 제시→ 학생 과제 활동 수행 → 결과 제출 → 교사 확인 및 피드백 ※ 단원 및 차시 특성, 학생 학습 여건 등에 따라 과제수행 중심 운영이 필요한경우

* 본교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실시하며 ①-1, ①-2 방법을 준용하여 활용함.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

	출석 확인 방법										
	실시간		LMS 활용 방법*						기타(대체확인)		
수업 유형	교사 확인	해당 교과 시간 댓글	시작 시간	진도 율	접속 기록	학습 시간	산출물 탑재	SNS	메시지 유선	증빙 자료	
실시간 쌍방향	0	0			0			0	0	0	
콘텐츠 활용 중심		0	0	0	0	0	0	0	0	0	
과제 수행 중심					0		0	0	0	0	
확인(인정) 기간	당일	원칙적으	로 당일	(대체학(습은 수업	법일 포함	함 3일 내	12시끼	시 제출	시 인정)	

* e학습터, ebs클래스, 클래스팅, 구글 클래스룸,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MS팀즈 등

<<본교 출석 처리 지침>>

- □ 등교수업과 동일하게 당일 <u>수업 시간표에 따라 원격수업 플랫폼에 실</u> 시간 접속 하여야 출석으로 인정
- □ 불가피한 상황으로 조종례 및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u>사전</u>에 담임교사에게 역락해야 함
- □ 부득이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하여 불참 사유가 인정(증빙서류 제출)되면 교과 교사가 <u>대체 학습 과제</u>를 부여하고, 그 과제를 수업 불참일 기준 3일내 12시(정오)까지 제출하여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수업일 포함)
- □ 늦잠, 태만 등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수업 시간에 출결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결과) 처리됨
- □ 인터넷 접속 불가, 기기 고장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담임교사에게 미리 연락해야 함
- □ 쌍방향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가정 및 일정한 장소에서 집중하여 수업에 참 여, 이동 중 수업 참여는 불가
- □ 해당 수업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연락하였을 경우 그 시간은 결과로 처리함 (반드시 사전에 학생이 자발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연락을 담임 교사에 게 취하여야 함)

□ 학생 관리

- (대체학습 대상 학생) 학생의 장애,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원격 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공한 대체 학습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 * 장애학생, 지리적·물리적 환경에 의해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학생 등
 - ** (예시) 서면 학습자료 및 과제 제공. 등교 시 학부모 학습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
 - ※ 기한 내 원격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 교외 체험활동 신청에 따른 출석 인정 결석자는 대체학습을 통해 해당 수업의 출석인정 처리가 불가능함
-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 * 확진 받은 학생, 격리통지 받은 학생(동거인이 격리대상자인 경우 포함),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출결증빙자료는 9쪽 참조)
 - ※ 그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기한(5일 또는 학교장이 정한 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 결석' 처리
- (장기결석 학생 관리) 학교장이 정한 기간 이상 장기결석 시 ^①유선 확인 및 출석 독려, ^②소재 확인 불가 시 교육정보시스템(NEIS) 미인정 결석 등록 및 수사의뢰
 - ※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 ②항 5목 및 ③항. 제92조의2 ②항

[등교수업]

- ❖ 교육부훈령 제365호 및 2021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
- ※ 코로나19로 인해 <u>학교·학년·학급 단위</u>로 <u>등교가 중지</u>될 경우, <u>즉시 원격수업</u>으로 <u>전환</u> 하여 운영(학생 등교 전 등교중지 시 당일부터, 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 ※ 기타 미등교 등으로 장기결석 시,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코로나19로 미등교(00일)'로 기재 (출석인정결석 처리 기간은 장기결석에 해당하지 않음)

- **(등교중지 대상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 인정결석'** 처리
 -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처리
 - ※ 교과별·교사별 자체제작 자료, EBS 자료 등을 활용하여 대체학습 자료 제공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통지 사본 등)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3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참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하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따라 별도 처리 가능

【 대상 학생별 정의 】

- ※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예방 관리 지침**(중대본, 교육부)이 **개정**되는 경우, **사례별 정의** 및 **등교중지 관련 세부사항**(기간, 등교재개 요건 등)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고,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 받은 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
- ※ 해외 입국자 중 '격리면제 대상자'의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이 아니며, 세부적인 대상자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3판)' 참조
- 임상증상 발현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
- ※ <u>임상증상 발현 학생의 관리, 등교증지, 등교재개</u> 등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3판)'에 따라 실시

【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참고 9]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일)에 열이 내려가고, 6.8.(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 (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9-4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또는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참고1] 참조)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시전 연락 (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 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기타 미둥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시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17쪽 참고)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
-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쌍방향 실시간 수업 제외)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 단, 학교의 지필·수행평가 기간(시간)은 미인정 결석(결시) 처리함
 - ※ 증빙서류: 학생이 제출한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

6. 교수·학습

□ 기본 원칙

- (밀집도 최소화)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을 준수하고, 상황에 맞는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및 강화된 방역 계획 마련
 - *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 ** △학년별·학급별 등하교·수업·급식 시간 등을 분리, △등하교 출입구, 급식실 이동 경로 등 분리. △도서관. 과학실 등 특별실 공동 사용 최소화 등
- (밀접 접촉 최소화) 등교수업 시 학습 도구 등의 공동 사용을 자제 하고, 학생간의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유의
- 일과시간 중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학급 내에서 학생 간 최대** 거리를 확보하여 책상을 배치함
- * '학교 내 미스크 착용 수칙' 및 '미스크 착용 중 이상반응(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 대응 방침'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준수
- 모둠활동 운영 시, 감염 우려가 없도록 학생 간 거리를 확보하고 밀접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활동 자제
- (개인위생 교육)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상시 교육 실시
- 창문 수시 개방, 개인책상 및 개인물품 소독하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의심 증상 발현 시 바로 말하기 등
- (수업방식 혁신) 기존 교실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원격수업-등교수업
 간 혼합 수업 등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방식 도입 권장

세부 모형 예시
• 콘텐츠 활용수업 +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과제수행형 원격수업
• 콘텐츠 활용수업+과제수행형 원격수업+쌍방향 원격수업
• 원격수업(예습학습) + 등교수업(피드백, 프로젝트학습 등) 모형
• 등교수업(핵심개념학습) + 원격수업(확인과제학습.피드백) 모형

- (역량함양 수업) 토의·토론 수업 및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방법 운영 활성화

역량 중심 수업 운영 사례

- ❖ 교과(통합사회) 실시간 쌍방향 모둠별 토의 수업(합리적 의사결정모형)
- (주제) 인권 기반의 사회 정의 실현 방안
- (방법) 패들렛(온라인 포스트잇 활용) 활용 브레인라이팅 수업→화상회의 프로그램 활용 실시간 쌍방향 모둠 토의 → 피드백(허니컴 프로그램의 보드 활용) 및 학습 노트 작성
- (역량) 원의지사고역함 🕂 에사동역한 🕂 광동제 역항
- ❖ 창의적 체험활동 원격수업 간 블렌디드 수업(콘텐츠활용+실시간 쌍방향수업)
- (영역) 민주시민교육 서로 존중하는 학급을 위한 학급규칙 세우기
- (콘텐츠 활용)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의 중요성 알아보기(지식채널 활용)
- (실시간 쌍방향)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토론을 통해 학급규칙 정하기 ※ 실시간 댓글, 온라인 투표 등 활용
- (역량) 의사소동역장 + 공동체 역장 + 문제애본역장
- (맞춤형 피드백 제공) 수업 중 형성평가를 활용한 학습 수준 진단, 참여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개인별 피드백 제공 활성화

□ 교과 활동

- < 사회적 거리두기 1 ~ 2.5단계 >
- (교과 수업)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연계한 혼합 수업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활동 및 학습내용 등에 대한 교사별 학생 개인 피드백 강화
- 등교수업 시 토의·토론 등의 소통이나 실험·실습 등의 기자재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비말이나 접촉 등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후 수업 실시
- (방역 강화) 수준별 수업, 교과교실제 등 학교 내 이동 수업,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수업 전후 교실 방역 및 물품 소독 등 관리 철저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 시, 다양한 원격수업 유형을 활용하여 학생 참여 중심의 **토의·토론**,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실시

□ 창의적 체험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기준(요약)>

구분	1 ~ 2.5단계	3단계
자율활동	• 교내 방송시설 활용, 불가피한 대면활동은 학교장 승인 후 추진	• 수학여행, 수련활동 불가
동아리활동	방역지침 준수 후 동아리 활동가급적 학교 외 활동 자제 외부 강사 출입 시 학교장 승인 및 발열검사 등	• 동아리 활동 전면 원격 전환
봉사활동	비대면·비접촉 봉사활동 가능고입 봉사활동 시수 관련, 감축 기조 유지 등 필요 시 적정 조정	• 외부기관 방문대면 실내활동 금지 • 비대면·비접촉 봉사활동
진로활동	• 숙박형 프로그램 자제	• 전면 원격 진로교육 활동

※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중점연계형 자유학기 활동 포함)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교과 활동 또는 비교과 활동(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 방안에 준하여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1 ~ 2.5단계 >

- (자율활동)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연계한 학생 활동 실시
- 등교수업 시 가급적 교내 방송시설을 활용하고, 대면 활동이 불가피 할 경우 참석인원, 행사 공간, 진행방식 등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학교장 승인 후 추진 ※ 학급활동(반장선출, 담임선생님과 자체활동)안전교육·성교육·생조훈련·대피훈련 등
- 대규모 단체 활동 및 대내외 행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방역조치를 이행 후 최소한의 인원만 제한적 참여
- ※ 수학여행, 수련활동, 학교축제 등은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경계'인 경우 지양
- (동아리활동) 대면·비대면 방식, 블렌디드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아리활동을 실시하고, 대면활동 시 방역지침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후 실시
- 밀폐된 공간 내 활동 자제, 실습이나 집단 활동의 경우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동아리활동 장소에 대한 방역 대책 마련 등
- 가급적 학교 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부강사 출입 시 학교장의 사전 승인 및 발열 검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여 안전 확보

-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동 시간대에 클럽별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한 장소에서 다수 클럽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방식 지양
 - ※ 학생 간 체육복을 빌려 입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간 접촉 방지를 위해 탈의실 이용 시간을 충분히 확보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 및 지역사회 여건, 학생 요구 등을 반영하여 **대면**, **비대면**, **혼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 ※ 비대면 방식: 시공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운동 종목 기술의 숙련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운영(예: 줄넘기 이중 뛰기, 농구 자유투, 축구 리프팅 등)
- (봉사활동) 필요 시 봉사활동 소양교육 또는 사전교육을 원격 으로 실시하고, 봉사시설(장소), 봉사내용 등을 검토하여 학생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봉사활동 계획서」 학교장 사전 승인
 - ※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전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해 안전확보 여부를 확인 후 진행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에 안내
- **외부기관 방문 자제, 학년 전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학교차원**의 실내봉사활동 **지양하며, 선플달기 등 비대면 봉사활동 활용 가능**

≪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기준(예시)≫

- ▶ 주관기관을 통해 학생의 **봉사활동 직접 참여여부를 확인 가능(**실시간 쌍방향, 영상·사진 저장 등)
- ▶ 봉사활동 실천과정의 사진·영상 등(시작 전·실천 중·마무리)이 포함된 활동보고서 제출
- ▶ 학생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사전 제출 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 사전 확인 필요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 자원봉사활동 기본원칙(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 충족
 - ※ 개별 봉사활동의 인정 여부는 교육청별 봉사 관련 지침(매뉴얼) 참고
- 코로나 지속 상황을 고려, 시도교육청별 고입전형 기준 내 봉사 활동 시수, 배점·반영비율 등 적정 조정* 권장
- * (예시) 20년 기 감축시수 유지, 필요 시 상반기 감염병 상황 등을 고려한 추가 조정 등 지역별 상황에 맞는 조치
- (진로활동) 진로체험학습은 체험 유형 및 방법*, 참석인원, 체험
 공간 등에 대한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학교장 승인 후 추진
 - * 진로체험유형: 강연·대화형,현장견학형,직업실무체험형,현장직업체험형,학과체험형,진로캠프형

- 숙박형 프로그램은 자제하고, 가급적 비숙박 프로그램으로 변경 운영
- 원격수업으로 진로교육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등교수업과 연계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진로교육 플랫폼 적극 활용**
- ※ (예시) △온라인 진로교육활동 사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https://mentoring.career.go.kr)을 활용한 진로멘토링 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온라인 진로상담(https://career.go.kr), △온라인 창업체험교육 플랫폼(https://veep.kr)을 활용한 창업동아리 활동 등
- ※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중점연계형 자유학기 활동 포함)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의 '교과 활동'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 (공통) 비대면(원격수업)이 가능한 활동(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에 한해 원격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실시
 - ※ (원격 동아리활동 예시) 가상 박물관체험(VR, 영상, 사진자료 등)을 통한역사 문화 홍보자료 제작 등 우리역사바로알기 역사동아리 활동 등

□ 기타

- (교외체험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 단. 가정학습의 인정 기간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결정함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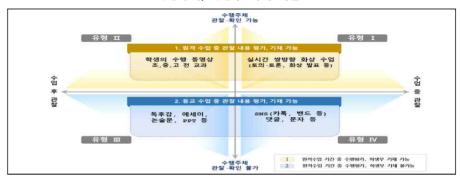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학교 61쪽, 고등학교 58쪽
- (교내대회)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 후 실시 가능
- 밀폐된 공간에서의 활동을 자제하고, 단체 활동으로 구성된 교내 대회의 경우 일정거리 확보 등 준수

- 비대면으로 교내대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활용** 쌍방향 화상 수업, 학생의 수행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 등 ** 비대면 대회 시, 학생의 활동 결과물 등 증빙 자료 보관 필요
- (학생 상담) 전문상담(교)사는 상담 수요조사 또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파악하여 상담 지원 ※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학교는 교육청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활용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위(Wee)센터 및 지역 내 전문 기관을 연계하여 상담 지원
- (격리학생 심리지원) 불안, 우울 등으로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의 경우 위(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외부 전문 상담기관 연계
- 격리 경험을 이유로 따돌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급 구성원을 대상으로 배려·공감 교육 실시
- (소통강화) 원격수업 시 실시간 조·종례 등을 통해 비대면 환경에서 교사-학생, 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여 사회성 함양 및 정서발달 도모 ※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을 활용한 학급회의. 학생자치법정 등 사례 발굴·공유('20.9.~)

7.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

□ 원격수업 학생평가 · 학생부 기재 원칙

<학생평가, 학생부 기재 개념도>



-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하여 평가** 하고 학생부에 기재 가능
 -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통한 토의 · 토론, 화상 발표 등(유형 I), 학생이 제출한 수행 동영상(유형Ⅱ)으로 평가 · 기재 가능
-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할** 경우 등교수업에서 평가하고 학생부에 기재 가능
 - 원격수업에서의 학생 활동을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한 내용을 평가·기재 가능(유형Ⅲ,Ⅳ)
 - ※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학생 활동은 평가·기재할 수 없음

[평가 및 학생부 기재 예시]

-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시 실시한 토의·토론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한 사항을 바탕으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 학생이 수행하여 제출한 생활체조 영상을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하여 자세 및 순서 정확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 등교수업에서 '비평의 기법'에 대해 지도하고, 원격수업 중 작성한 독후감을 수정·작성 및 발표하게 하여 교사가 관찰·확인한 이해도, 태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 원격수업 시 댓글을 활용하여 창작한 모둠별 단편극을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 실시한 모둠별 단편소설 창작 활동에서 교사가 관찰한 창의성. 협동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학생평가]

□ 기본 원칙

- (학생평가)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직접 관찰·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
 - ※ 지필평가는 등교하여 실시
- (평가계획 수립 및 안내)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산출식)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철저한 사전 안내 필요
- (평가운영 조정) 사전에 계획한 학생평가가 어려울 경우 평가일정 조정, 지필평가 횟수 조정, 수행평가 반영비율 조정 등을 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판단
 - ※ 공정한 수행평가를 적정시기에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성적산출 근거자료 사전 확보 노력 요망
 - ※ 수립(변경) 된 평가 계획은 평가 실시 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 (결시생 성적처리)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 ※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 ※ 코로나19 임상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 지필 평가

- (횟수 조정) 내신성적 산출 결과의 타당성, 형평성 등을 감안해 시도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 (고사장 운영) 학년 학급 단위 혼합 고사장 운영을 자제하고, 유휴 공간을 활용해 학급원을 분리 배치하거나 학년별 고사시간 분리 운영 권장

- 수행 평가
- (비율 조정) 성적 반영 비율 등은 시도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조정
- (안전 확보) 학생 간 밀접접촉을 유발하거나 비말 발생이 우려되는 평가(모둠형 수행평가 등)는 지양하되, 불가피할 경우 방역 강화 등 조치 후 실시
- (시기 분산) 학생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단기간 내 여러 과목의 수행평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실시 권장

□ 운영 방안

- (1 ~ 2.5단계)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성적 산출 가능
- **(3단계) 중1·2**는 성적을 미산출(평가 미실시)하는 **PASS제 적용 가능**, **중3·고교**는 평가를 실시*하여 성적 산출
 - * (지필평가) 제한적 등교일을 활용하여 평가 실시, (수행평가) 가급적 원격수업을 활용하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제한적 등교일에 평가 가능

【 중학교 1·2학년 PASS제 적용 기준 】

- ▶ 전국 평균 수업일수 1/3 시점에 PASS제 적용 여부 결정(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안내 예정)
- ▶ 학생이 진급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이수(P) 처리하고, 형성평가 등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확인하여 맞춤형 피드백 제공 활성화
- * (참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학생부 기재]

□ 기본 원칙

- (학생부 기재)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재
-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연계하여 실시한 경우, 원격수업의 내용 (또는 과제 내용)과 등교수업에서 학생을 관찰·평가한 내용을 연계하여 기재 가능(원격수업(또는 과제) 내용만을 단독으로 입력 불가) ※ 각 항목의 기재 방법 등은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준용
- (기재 내실화) 내실 있는 학생부 기재를 위해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계획·운영 시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 방안 확보 ※ 예) 원격수업 시 관찰 가능 유형(I·II)을 포함하여 운영, 원격수업과 연계하여 등교수업 시 학생참여형 수업 실시 등

□ 운영 방안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급별 평가·기록 기준 >

구	분		중				자유학	기		고
	1~2.5 단계		말 성적) 신출 일· 수행평 가)를	통해	성적					
평가	3단계	- (1·2학 - (3학 • (지필 - (1·2학	학기말 성적) (1-2학년) 미산출 기능(P처리) 3학년) 산출 지필·수행평가) (1-2학년) 미실시 가능 3학년) 실시				• (학기 말 성적) 미 산출(P처리) •평가 실시		•(학기말 성적) 산출 •(지필수행평가) 를 통해 성적 산출	
교과	1~3	기재 대상	모든 학생의 모든 과목	학업성적(통해 정한 만한 사형	남위(특		모든 괴	학생의 나목 11 활동 포함	모든 학생의	모든 과목
세특	1~3 단계	기재 내용							기재 가능	
	125	기재 대상	모든 학생							
창·체	1~2.5 단계	기재 내용	정량자료 ! ※ 관찰 가능 ※ 원격수업	수업시긴	화보				제내용) 연계	기재 가능

구	분		중	자유학기 고				
		기재 대상	모든 학생					
	วะเม		자 율활동	정량기록 + 교사 관찰·평가 내용 + (원격수업 내용)				
	3단계	^게 기재 내용	기새	동염되야공	정량기록 + 교사 관찰·평가 내용 + (원격수업 내용) ※ (가능할 경우) 학생 상호평가 내용			
			진로활동	정량기록+ 원격수업 내용 +대면/비대면(유선 포함) 진로상담 결과				
	1~2.5	기재 대상						
	단계	기재 내용		(유선 포함) 으로 실시한 교사의 관찰·평가, 상담 내용 종례 및 실시간 온라인(유선 포함)으로 진행한 진로상담 결과 포함 가능				
행·특		기재 대상	모든 학생					
	3단계	기재 내용		_{유선 포함)} 으로 실시한 교사의 관찰·평가, 상담 내용 례 및 실시간 온라인(유선 포함)으로 진행한 진로상담 결과 포함 가능, 필요시 t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1 ~ 2.5단계 >

- (교과활동)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수행평가 등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을 종합하여 기재
- **(창의적 체험활동) 정량적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교사 관찰여부와 무관)
 - * 기재요령(중 82쪽, 고 85쪽) 참조(예: 학교폭력 예방교육 2회(3.25, 9.3), 입학식(3.2) 등)
 - ※ 교사의 관찰·평가를 통한 **정성적 기록**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에 한하여 기재 가능
- **(수상경력)**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내대회를 실시한 경우(16쪽 참고)에 한하여 기재 가능
 - ※ 단, '수상경력'의 기재 방법 등은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준용(수상 경력 외 다른 항목에 참가사실 등 기재 불가)
- **(인적·학적·출결)** '21. 3. 1.부터의 사항을 기재
 - ※ 원격수업 기간 중 출결 기록(특기사항 포함)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 불가피하게 원격수업 기간 중 운영된 시간표가 나이스에 등록된 시간표와 불일치 하는 경우, 내부결재 등을 통해 실제 운영된 시간표에 대한 근거자료 마련 필요
 - ※ 고등학교는 원격수업 운영일수를 출결 특기사항에 일괄 입력(상세 기준 및 방법은 [참고3] 참조)

○ (전·출입 시) 원적교에서는 학생의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시 학생의 출결상황 및 활동내용 등이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전출 시 관련 자료를 송부함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 교과 세특, 창체 특기사항의 경우, 교사가 원격수업 기간 중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과 함께, '원격수업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 가능 토록 허용

※ 3단계 기준 전면 적용 확정시에도 1~2.5단계에서 관찰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

* 원격수업 내용 기재 예시

- ❖ 교과세특: 원격수업을 통해 창의성에 대한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가능성 정도와 의견을 표현하는 구문을 연습함.
- ❖ 자율활동: 원격수업 중 실시한 학교폭력예방교육(2021.06.10., 2021.07.08.)을 통해 학교폭력의 예방방안 및 학생들의 실천 방안에 대해 학습함.
- ❖ 동아리활동: (역사탐구반)(00시간)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독립운동 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청함.
- **수상경력, 인적·학적사항, 등교수업 이전 활동**(독서, 개인 봉사활동 실적, 자격증, 진로희망사항 등)에 대한 작성 기준은 **1 ~ 2.5단계와 동일**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3단계 적용 기준 】

- ▶ 한 학기 내에서 전국 평균 **수업일수 1/3 시점에 3단계 기준 적용 여부 결정**(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안내 예정)
- ▶ **3단계 기준 적용 여부**는 **학기별**로 결정하며, **해당 학기 내**에서만 유효함
- ▶ 1, 2학기에 학생부 작성 적용 기준이 다른 경우(예: 1학기: 1단계, 2학기: 3단계), 각 영역의 문두에 괄호로 학기 구분(예: (1학기))을 입력하고 내용을 입력함

8. 향후 추진 계획

○ 코로나19 감염증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시 교육부와 협의하여 추가 대책 마련·안내

참고1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별 대응활동(등교 시 출결 관련)

구분	해외 신종 감염병	주요 대응 활동
관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 <u>감염병별 대책반 운영(질본)</u>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 대응 역량 정비
		• 필요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본) 설치·운영 · 국외 환자 유입차단, 검역강화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 (지자체) 발생 및 인접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본) 운영 지속 ·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설치·운영 · 검역강화외 지역사회 전파 차단 강화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 범정부적 대응체계 마련 - 필요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검토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지자체) 발생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 <u>범정부적 총력 대응</u>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별 대응활동(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2020.2.23.)

참고2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중대본, 11.1.)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구분	생활방역	지역적 유		전국적 유	- 우행 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 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 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 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 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 하게 환자가 증가 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 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 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2개 이상 권역 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 ~500명 이상 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 ~1000명 이상 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기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 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	조치(1.다중이용시설	l)	
중점 관리 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방문판매 등 직 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 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 금지 이외 시설도
일반 관리 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 가지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 화, 위반 시 원스 트라이크아웃제	운영 제한
기타 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구분	생활방역		 구행 단계		ੵ <u>ੵ</u> 유행 단계	
국공립 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체육시설, 경륜· 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 지시설 (어린 이집 포함)		염 확산 양상, 시설	별 위험도·방역관리 급돌봄 등 필수 서비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	주요 방역조치(2	일상 및 사회·경제?	덕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 <u>포</u> 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 ⁷	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 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 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	찬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 단계 조정 시 병		에 따라 종교계와 현	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종교 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 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 (예: 1/3 수준)	근무 등 확대 권고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	·크 착용, 환기·소독	, 근로자 간 거리두	기 등 의무화	